

고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75호)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 | |
|-----------------------------|-------------|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 8. 31 | 고 성 군 수 |
| 나. 회 부 일 자 : 2009. 8. 31 | |
| 다. 상정·의결일자 : 2009. 9. 8 | 총무위원회 상정·의결 |

2. 개정이유

-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 개정(2009. 2. 3)으로 고성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는 한편,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위원회 위원 위촉 대상에 시민단체 추가 (안 제2조)
- 위원회 관할 대상 변경 (안제3조)
 - 고성군소속공무원 및 퇴직공직자
 - 고성군소속5급이하공무원및관할공직유관단체임직원, 퇴직공직자
 - 고성군의회의원및의회소속공무원, 퇴직공직자
 - 고성군의회소속5급이하공무원,퇴직공직자
- 위원회의 회의 관련사항 변경 (안 제6조)
 - 위원회의 의결사항 :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음 (신설)
- 위원회 수당 지급 사항 변경 (안 제8조)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성군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 위원회의 연차보고서 제출 의무 추가 (신설, 안9조)
 - 매년 군의회 2차 정례회시 전년도의 재산등록, 심사에 관한 보고서 제출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및 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20조의2
 -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36조

5. 전문의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변경취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제3조 2항은 위원회의 관할 대상을 정한 것으로 그 대상은 “고성군 및 의회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한 하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6조 제5항의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은 공직자 윤리법시행령 제19조제5항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추어 신설한 조항이며, 조례안 제9조의 규정도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 2의 규정에서 지방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등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신설하는 등 관련 법령에 부합되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활한 법 집행을 위한 적절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6. 질의 및 답변 요지

- 문 : 5명으로 구성된 윤리위원회에서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면 3명이 출석하여 2명만 찬성하면 결정되는 것으로 회의결과에 신뢰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시 됨.
- 답 : 그러한 결과의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출석을 독려하는 등 회의운영에 있어 만전을 기하겠음.
- 문 : 조례 개정의 근거가 되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 취지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우리군의 퇴직공직자도 취업 제한에 해당되는 퇴직자가 있는지 ?
- 답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위원회에서는 연차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며, 4급이상의 퇴직자는 취업제한 대상임.

7. 토 론 : 없음

8. 심사결과 :

- 2009. 9. 8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